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39

발의연월일: 2024. 7. 25.

발 의 자:송기헌・김영배・김태년

민병덕 • 이소영 • 정성호

정일영・조 국・주철현

허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정비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 록 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2년 10월 기준 정 비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

3호가목 신설).

법률 제 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제9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②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	3		
계에 대한 융자			
<u><신 설></u>	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		
	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u>가.</u> ~ <u>다.</u> (생 략)	<u>나.</u> ~ <u>라.</u> (현행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음)		
3의2. ~ 6. (생 략)	3의2.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